

2026년도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 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데이터 융합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도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1 사업목적

- 해외 대학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역량*을 갖추어 해외진출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 * 1) 글로벌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데이터 기반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
 - 2) 해외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식·수집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내 비수도권 지방대학(원)
 - * 정부의 지역 균형성장, 거점국립대 등 지역대학 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 데이터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방대학 지원 (국정과제 ④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 / 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예산규모) '26년, 총 5억원
- (지원기간) 최대 6년(1단계 3년 + 2단계 3년)
 - *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
 -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6.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1개 과제 지원('26년 과제당 5억원 이내, 2~6차년도 연간 10억원 수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에 한정하여 확정('27년 이후는 1차년도 연구개발비의 2배 수준)이며, '27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방식) 품목지정(제시된 지원분야의 참여조건을 반영하여 대학이 자유롭게 지원)
- (지원내용) 데이터+산업, 데이터+경영 등 데이터 융합 분야에서 기업경영 등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운영 비용
- (지원분야) 데이터 융합 분야 1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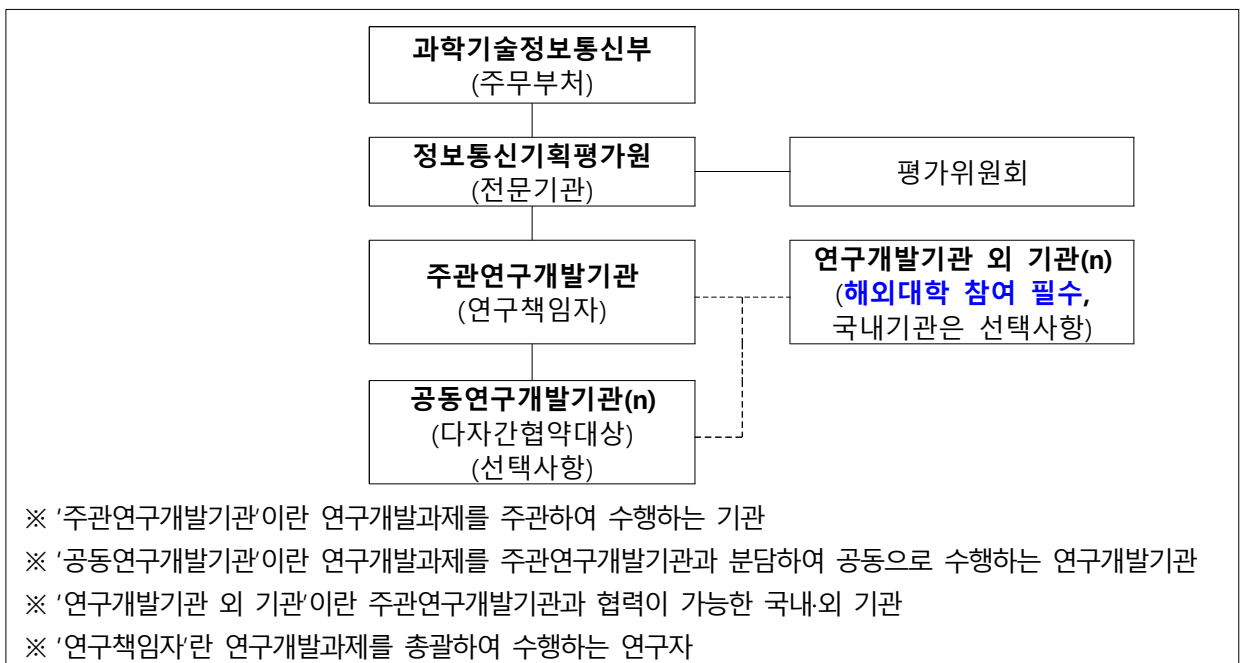
품목 (공모분야)	과제수	'26년 지원금액	주요 내용
해외연계형	1	5억원	데이터 융합 분야 석·박사과정 신설·운영(매년 10명 이상 선발·교육), 국내에서 수행하되 해외대학과 교류하며 국제공동연구(연 2건 이상) 추진

공통사항

- 연구개발계획서가 공고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사업 공고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편성하되 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에 활용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함(3책5공 제외)
- (보안과제 분류) 본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국외수혜정보 보고)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가점
 - 2개 이상 대학(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 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감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1점)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자격 및 참여요건

□ 신청자격

- 데이터 융합 분야 석·박사학위 과정 신설이 가능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원)
- * 동일 기관(대학(원))에서 주관 또는 공동기관으로 1개 과제 신청 가능
- * 현재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사업 수행기관은 지원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데이터 융합 석·박사학위 교육과정 신설 가능 국내 비수도권 지방대학(원)
 - * 캠퍼스(Campus)는 동일 대학을 의미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인정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과 분담하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비수도권 지방대학(원)(선택)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국내외 대학(기관) 또는 기업
 - 교육과정 개발·운영, 국제공동연구 등을 위해 해외대학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교육·연구를 수행하고,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과제추진 내용

- 데이터 융합 석·박사학위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전임 교수 및 학생 정원 확보, 해외 교육, 글로벌 캡스톤, 해외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해외연계형

- (교육과정) 글로벌 상위권 대학과 협력하여 재직자 또는 전일제(Full-time) 학생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석·박사학위 과정 운영
 - '27학년도 봄학기부터 데이터 융합 분야 석·박사학위 과정 연 10명 이상 선발(필수)
 - 국내 교육과정 이외에 해외 현지학습 및 현지연수, 해외교수 온라인수업 등 해외대학과의 교육·연구 상세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
 - 대학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전문/일반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등 교육과정 운영 형태는 대학 자율
 - 재직자 과정 또는 전일제(Full-time) 과정 등 입학 대상과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학 자율이며, 관련 세부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 재직자 과정의 경우 석·박사학위 과정 10명 선발 기준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한정함. 대기업, 공공기관 재직자의 입학은 가능하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원으로 등록금 등 지원은 불가
- (공동연구) 기업 등으로부터 대학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야별 해외 상위권 대학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연 2건 이상 수행해야 함
 - 국내대학과 분야별 글로벌 상위권 대학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업 적용·활용까지 지원
 - 공동연구에 활용될 기업 데이터 등에 대한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 * 대학-기업 간 MoU, 기업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방안 등
 - 데이터연구센터 등과 연계, 기업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본 과제의 교육과정 재학생 및 대학내 Full-time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프로젝트 수행
 - 프로젝트의 규모, 방식 등은 대학 자율
- ※ 공동연구는 본 과제 교육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캡스톤 또는 SCI(E)급 논문으로 대체 가능하나 과제 지원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추진내용을 명시해야 함
- (사후관리) 배출인력의 취업관리(취업률, 취업처 등) 및 학위 취득후(5년간) 후속관리 노력
 - 졸업생의 활동성과 모니터링, 재학생 멘토 활용, 정부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과제 수행대학에서 졸업생 커뮤니티 운영 및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
- (기타) 교육과정 운영 및 해외 대학과 협력 관리 등 본 과제의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1명 이상의 행정전담 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 행정전담 인력은 인건비에 편성할 수 있으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 금지

참고사항

□ 2025 세계 대학 순위 :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순위	대학명	순위	대학명
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1	EPFL
2	Carnegie Mellon University	12	Imperial College London
3	University of Oxford	13	New York University
4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4	University of Washington
5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15	Cornell University
6	Harvard University	16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7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7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8	ETH Zurich -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18	The University of Hong Kong
9	Yale University	19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10	University of Toronto	20	...

(출처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5: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위 표는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세계 대학 순위' 중 일부 발췌한 예시자료 임

※ 글로벌 상위권 대학은 본 과제 신청대학의 교육과정(커리큘럼) 및 분야(산업 경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QS 외에 글로벌 상위권 대학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대학의 우수성은 신청대학에서 입증해야 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 평가절차

-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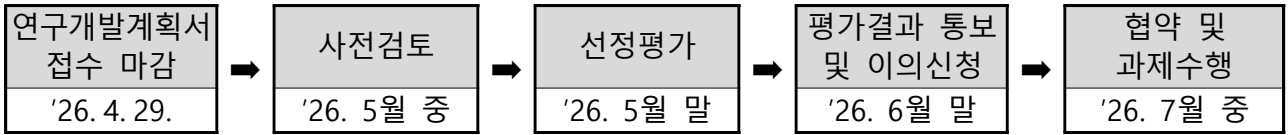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구분	평가방법	주요내용
1차	사전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서류검토를 통해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의무사항 반영 등 과제신청 적합 여부를 확인
2차	서면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검토
	발표평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
3차	최종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 역량 (35)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 및 역할의 구체성	10
	· 수행체계의 적절성	15
	· 인재양성 관점에서 수행기관별 역할의 구체성	10
인재양성 전략 및 계획 (30)	· 전주기적 인재양성 계획의 우수성	15
	· 해외대학 및 산학연계 인재양성 방안의 우수성	15
연구수행 계획 및 방안 (25)	· 연구 목표와 프로젝트 주제의 우수성	15
	· 프로젝트 주제 발굴 과정 및 기업데이터 확보방안의 적절성	10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 (10)	· 사업 성과관리 및 제고 방안의 우수성	10
합계		100

□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 2개 이상 대학(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평가 시 감점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1점)

□ 평가 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킴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 접수 결과 단독 신청인 경우, ‘지원대상’ 종합평점 기준을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6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사전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국가연구개발(R&D) 관련 규정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www.zeus.go.kr)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 단, 1억 원 이상의 장비는 전문기관(IITP) 심의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 심사 결과를 거쳐 취득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 관리하여야 함
 -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인재양성 품목지정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1차년도)에 한정하여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 '27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 근거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R&D사업 관리를 위한 과기정통부 고시 등을 준용

□ 공고기간

- 2026. 3. 26(목) ~ 4. 29(수) 14:00까지(35일간)

□ 전산등록기간

- 2026. 4. 6(월) ~ 4. 29(수) 14:00까지
 - * 신청 마감일(14:00)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 **마감시간 이전(13:59:59)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해야함**
(신청완료 확인 방법 : "최종확인 및 제출" 메뉴 → "제출완료" 확인)
 - * **마감시간 이후(14:00:00)에는 수정 및 전산 등록 불가**

□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IRIS)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 별첨1 양식 준용	전자파일 (PDF)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각각 작성 후 제출
3	우대사항 증빙 서류 각 1부(선택)			해당 주관기관 제출
4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 별첨2 양식 준용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 별첨3 양식 준용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각각 작성 제출
6	사업자등록증(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각각 제출

○ 1, 2, 4, 5번 제출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5번 제출서류는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 책임자만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신청 방법 및 접수방법

○ 접 수 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정보 → 사업공고 → 접수중 목록에서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 검색 후 전산접수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신청서류 양식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공지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고 →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 공고

☞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 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9

사업설명회

□ 설명회 일정(안)

○ (일시) 2026. 4. 2.(목) 14:00

○ (장소)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서울역 1호선 4번 출구에서 1분)

○ (주요내용) 사업 추진방향, 신청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 지원 시 필요한 사항 등

10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핵심인재팀

문용관 수석(042-612-8481, munyk@iitp.kr), 이수현 책임(042-612-8487, lsh16@iitp.kr)

□ 전산접수 관련 문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 1877-2041